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38호 2022. 1. 5.(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1-18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더샵 포르시엘 2차) 및 거창군관리계획(가지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	3
제2022-2호 거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8
제2022-3호 거창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12
제2022-4호 거창군 도로명주소 고시	14

공 고

제2021-1805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6
제202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19
제2022-6호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20
제2022-10호 거창군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26
제2022-17호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공고	27
제2022-18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2
제2022-21호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3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더샵 포르시엘 2차) 및 거창군관리계획(가지2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거 창 군 수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더샵 포르시엘 2차)

2) 사업주체

가. 상 호 : 주식회사 금호주택

나. 대표자 : 유한성

다. 영업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호(아진캐슬상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23-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23,132m²

다. 연 면 적 : 74,698.6263m²

라. 규 모 : 아파트 6동(443세대),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실,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집, 주민편의시설

마. 형 별 : 84A형(전용면적 84.9252m²), 84B형(전용면적 84.6861m²)
84C형(전용면적 84.9023m²), 109형(전용면적 109.9844m²)
119형(전용면적 119.6985m²), 147형(전용면적 147.2930m²),
158형(전용면적 158.0352m²)

4) 사업시행기간 : 2022년 5월 ~ 2025년 1월(33개월)

2.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1)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 붙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붙임]

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8	가지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	-	증)26,130	26,13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28	가지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 신설 26,130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지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코자 함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26,130	26,130	100.0	
공동주택용지	-	증) 23,132	23,132	88.5	
도로용지	-	증) 2,998	2,998	11.5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294	8	국지 도로	367	소로 2-293	가지리 356-3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294호선	· 노선신설 (B=8m, L=367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2지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도로 신설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I	1	23,132	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	23,132	공동주택용지
I	2	2,998	거창읍 가지리 356-3번지 일원	2,998	도로용지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군관리
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20층 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가구의 형상을 감안하여, 각 동의 배치방향이 통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마감 손상으로 미관저해가 없도록 하며, 모든 외벽은 전면에 준하도록 통일되게 처리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함 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름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색채는 주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선택하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의 색채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 		

⑤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	거창읍 가지리 1323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북동변 및 북서변 차량출입 허용구간 설정 차량출입 허용구간 외 차량출입 불허 	차량출입 허용구간 도면참조

※ 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고시 관련도면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끝.

거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거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거창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 사업목적 : 거창다움의 보전과 홍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를 매개로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일원
4. 사 업 비 : 7,000백만원(균특 4,900, 지방비 2,100)
5. 사업기간 : 2020 ~ 2023년(4년간)

6. 주요사업내용

1) 함께 키우기

- 가. 신활력 공유센터 조성(공유가공공장, 커뮤니티센터, 공유텃밭)
- 나. 신활력 추진단 운영
- 다.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
- 라. 거창한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

2) 먹거리로 잇기

- 가. 특화 가공상품 개발
- 나. 거창푸드 육성

3) 지역에서 나누기

- 가. 공유부역 운영
- 나. 공유텃밭 운영

4) 세상과 나누기

- 가. 홀리데이 거창여행
- 나. 테마농장 100, 들밥식당

7. 사업시행자 : 거창군, 거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055-940-8280)
또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055-941-12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업 총괄표

사업명	구분	세부사업명	부문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① 함께 키우기	1-1	신활력 공유센터 조성	HW	4,701.0	3,290.7	1,410.3	21~23	가공공장 공유부역 공유텃밭 포함
	1-2	신활력 추진단 운영	SW	520.0	364.0	156.0	21~23	
	1-3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	SW	382.0	267.4	114.6	21~23	
	1-4	거창한 신활력 홍보 활동	SW	150.0	84.0	36.0	21~23	
	① 소계			5,753.0	4,027.1	1,725.9		
② 먹거리로 잇기	2-1	공유 가공공장 신축	HW	0.0	0.0	0.0	22~23	+440.0
	2-2	특화 가공상품 개발	SW	250.0	175.0	75.0	22~23	
	2-3	거창푸드 육성	SW	120.0	84.0	36.0	21~23	
	② 소계			370.0	259.0	111.0		
③ 지역에서 나누기	3-1	공유부역 운영	SW	125.0	87.5	37.5	21~23	+100.0
	3-2	공유텃밭 운영	SW	120.0	84.0	36.0	22~23	+50.0
	③ 소계			245.0	171.5	73.5		
④ 세상과 나누기	4-1	홀리데이 거창여행	SW	402.0	281.4	120.6	21~23	
	4-2	테마농장 100, 들밥식당	SW	110.0	77.0	33.0	21~23	
	④ 소계			512.0	358.4	153.6		
제경비	기타	기본계획 수립, 관리	SW	120.0	84.0	36.0	20~21	
	소계			120.0	84.0	36.0		
합계				7,000.0	4,900.0	2,100.0		

* 신활력공유센터 4,710백만원에는 공유가공공장 440백만원, 공유부역 100백만원, 공유텃밭 50백만원이 포함됨

□ 부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비고
계				10,959	10,959		
1	대평리	543-16		200	200	거창군	
2	대평리	981		1,316	1,316	거창군	
3	대평리	981-1		28	28	거창군	
4	대평리	981-4		131	131	거창군	
5	대평리	1323		1,100	1,100	거창군	
6	대평리	1343		279	279	거창군	
7	대평리	1344		177	177	거창군	
8	대평리	1318-2		87	87	거창군	
9	대평리	1322-4		1,209	1,209	거창군	
10	대평리	1322-6		77	77	거창군	
11	대평리	1323-2		17	17	거창군	
12	대평리	1324-3		747	747	거창군	
13	대평리	1335-4		825	825	거창군	
14	대평리	1335-5		1,084	1,084	거창군	
15	대평리	1335-6		1,024	1,024	거창군	
16	대평리	1336-2		916	916	거창군	
17	대평리	1336-6		30	30	거창군	
18	대평리	1342-1		536	536	거창군	
19	대평리	1342-2		299	299	거창군	
20	대평리	1342-10	답	135	135	농림축산식품부	
21	대평리	1335-8	답	206	206	농림축산식품부	
22	대평리	1323-1	도로	188	188	농림수산부	
23	대평리	543-18	구거	348	348	농림수산부	

거창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거창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거창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위천면 지역 내 유휴시설(구.파출소)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적 서비스제공 및 창업공간 조성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79-8
4. 사 업 비 : 500백만원(구 225, 지방비 275)
※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50백만원 포함(마을박물관)
[최종 사업비는 내진구조보강이 반영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사업기간 : 2021 ~ 2022년(2년간)

6. 주요사업내용

○ 위천 행복나눔 공작소 조성

가. 마을 빨래방 조성

나. 나눔 카페 조성

다. 마을박물관 조성

○ 사용대상 토지 및 건축물 명세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당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 용	
1	장기 리	479- 8	대	281	281	거창 군		-	-	-	위천 행복나눔 공작소 리모델링

7. 사업시행자 : 거창군

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055-940-82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2길 49-12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 북면 몽석리 1231-1	경상남도 거창군 가 북면 몽석2길 49-12	20220105	20090401	임진왜란 때 김이련이 반석 위에서 낮잠을 자 다가 꿈결에 도승이 나 타나 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가 북면 용암리 720	경상남도 거창군 가 북면 장전길 55	20220105	20090401	마을 앞에서 마을 뒤편 까지 이어진 긴 밭이 있어 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 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남 상면 대신리 1355	경상남도 거창군 남 상면 구청림길 61-61	20220105	20090401	구청림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30.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궤도, 주차장)사업
 - 나) 명 칭 : 궤 도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주차장 - 거함산 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3. 사업규모(변경없음)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궤도	고제면 개명리 산19-12번지	27,870.0	13,953.0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2017.8.24.)	
		주차장	고제면 개명리 산19-14번지	7,939.0	7,939.0	거창군 고시 제2017-105호 (2017.8.24.)	

4. 사업 시행자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산림과장)

5. 사업기간(변경)

○ 당초 : 2018. 10. 25. ~ 2021. 12. 31.

○ **변경 : 2018. 10. 25. ~ 2022. 12. 31.**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궤도

면	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총계		8개 필지		47,376	13,953		
고제면	개명리	2051-13	주	7,964	3,475		거창군
		2051-14	잡	1,944	492		거창군
		산22-29	임	13,822	486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	* * 석
		산19-12	임	4,110	28		거창군
		산19-31	임	4,559	4,531		거창군
		산19-14	도	13,316	3,280		국토교통부
		2036-6	잡	1,551	1,551		기획재정부 거창군
		2036-5	잡	110	110		기획재정부 거창군

○ 주차장

면	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총계		12개 필지		19,302	7,939		
고제면	개명리	산19-23	임	120	120		거창군
		산19-29	임	420	420		거창군
		산19-27	임	72	72		거창군
		산19-28	임	28	28		거창군
		산19-20	임	2,461	2,461		거창군
		산19-14	도	13,316	1,953		국토교통부
		2036-4	차	1,226	1,226		기획재정부 거창군
		2036-3	차	370	370		기획재정부 거창군
		2037-3	전	79	79		거창군
		2036-1	전	535	535		거창군
		2036	차	326	326		기획재정부 거창군
		2036-2	도	349	349		국토교통부

공 시 송 달 공 고

창원지방법원 2021아10175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거 창 군 수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송달주소	납부금액
신*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배산로23번길 * 연**아파트 **4호	11,932,620원

3. 공고기간 : 2022. 1. 5. ~ 2022. 1. 19.(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 유의사항
 -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2022. 1. 19.(수)까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에게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공시송달의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055-940-30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일

거창군수

1. 조 례 명 :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2. 폐지이유

-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택시를 운영 하였으나, 2021. 7. 1.자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되어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폐지함.

4. 입법예고기간 : 2022. 1. 3. ~ 2022. 1. 24.(20일간)

5.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복나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할 곳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복나눔과)
- 2) 전화 055-940-3743, 팩스 055-940-3739, 이메일 yej3022@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 ☎(055)940-37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조례 폐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관리책임부서 : 행복나눔과

연락처: 055-940-37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동불편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08. 1. 14)

3. 이용료 :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운영) ①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휠체어택시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용료의 징수방법) 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개정 2008. 1. 14)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개정 2008. 1. 14)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08. 1. 14.타조례개정 2019.7.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9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 1. 14)

부 칙 (2002. 5. 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괄개정 2019.7.1.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공고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거창군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총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거 창 군 수

1. 약정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2. 금고 협력사업비

(단위: 백만원)

금융기관명	협 력 사 업 비				비 고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495	165	165	165	
농협은행 거창군지부 (제1금고)	420	140	140	140	
경남은행 거창지점 (제2금고)	75	25	25	25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공고

거창군에서는 거창읍 중앙리, 대동리, 상림리, 대평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지 및 나대지 등을 매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거창군수

□ 매입대상지 선정 기준

- ① 주차환경이 열악한 거창읍 중앙·상림·대동·대평리 등 2층 이하 저층 주택 및 나대지
- ② 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건축한지 30년 (사용승인일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진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 ④ 대지면적이 60㎡ 이상 500㎡ 미만이어야 한다.
- ⑤ 대지경계 등 부동산 물권권리에 하자가 있는 필지는 제외한다.
- ⑥ 기타 주차장법 등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매입필지 가점 적용 기준

- ① 나대지나 폐가는 가점 적용한다(단, 건축 경과년도와 무관함)
- ② 면적(인접필지와 병행 신청할 경우 합필면적)이 크거나 공지 인접필지는 가점 적용하며, 기타 지역적인 균형배치 및 인근의 공영주차시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건축물 건축 경과년도(잔존가치가 적은 건축물 등)에 따라 가점 적용한다.
- ④ 기타 현장조건(경사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등)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한다.

□ 매입대상지 선정 및 계약 방법

- 매수를 신청한 필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필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심사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 후 계약한다.
- 매입필지 선정 시 매입계획 필지보다 약30%를 추가 선정하여 예비 매입필지로 지정 후 매매계약 포기자가 있을 경우 점수순으로 이를 대체하여 계약한다.

□ 기타사항

- 매매대상은 소재지상의 모든 물권을 포함한다.
-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 등기상 권리하자가 없어야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명도(거주자 퇴거 포함) 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로 문의(전화 940-338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

□ 신청기간 : 2022. 1. 5. ~ 2022. 2. 28.(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신청장소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거창군청 3층)

□ 신청방법 : 신청 장소에 직접 신분증 지참 접수(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1)
- 건물(나대지)사진(별지2)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이력 포함)

【별지 1】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신청서

① 접수번호		② 접수 일자		③ 건물 주 거주여부	(거주, 비거주)
④ 물건소재지				⑤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와 다를 경우)	
⑥ 토지소유자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 도로폭	m	⑧ 구 조	철근콘크리트 () 벽돌 () 시멘트블럭 () 기타:		
⑨ 대지면적	m ²	⑩ 건물연면적	m ² (지상 층/지하 층)		
⑪ 건물사용 승인 일	년 월 일	⑫ 임대가구수	가구		
*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건물(나대지)사진(별지2에 전경.근경 부착)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지참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거창군의 현지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본 부지의 매입을 신청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인)			
신청인 (대리인 신청시)	성 명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소유자의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창군수 귀하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신청 위임장

- 물건 소재지 :
- 대 지 면 적 : m²
- 주 택 유 형 :
- 건축 연면적 : m²(지상 층/지하 층)
- 소유자 성명 :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상기 단독주택지(나대지)의 매입 신청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22. .

붙 임 : 토지(건물) 소유자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수임인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거창군수 귀하

【별지 2】

건물(나대지) 사진

전 경 (주변 건물보이게)

근 경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기준의 조건과 규모를 관광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하도록 개정하여 거창군 관광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등 지원기준 개정(제2조)

- 지원기준의 조건과 규모를 매년 관광 환경 변화에 맞춰 정하도록 개정

나.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등 지원신청 기한 조정(제3조)

다. 별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기준” 삭제

4. 예고기간 : 2022. 1. 5.(수) ~ 1. 25.(화)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문화관광과)

다. 전화 055-940-3422, 팩스 055-940-3409, 이메일 salguc@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담당

【☎(055)940-3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시행규칙 제 호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정지원 기준)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하는 여행업자에게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기준을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고한다.

제3조제1호 중 “30일”을 “15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2조(지원 기준) ①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와 같다.</u></p> <p><u>② 2박 이상은 지원기준의 50퍼센트를 추가 지급하며, 여행업체당 한 번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p>제3조(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으려는 여행업체는 여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u>30일</u>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생략</p>	<p><u>제2조(재정지원 기준)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하는 여행업자에게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기준을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고한다.</u></p> <p>제3조(지원 신청) ①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으려는 여행업체는 여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u>15일</u>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들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관광사업 및 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별표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③ 관광객 유치지원 등 재정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2-21호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거창군수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2022. 1. 13. 시행) 제10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거창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 2조)
- 나.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 4조)
- 다.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4. 예고기간 : 2022. 1. 5.(수) ~ 2022. 1. 25.(화)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주 소: (우50132)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라. 전화/팩스 : 055-940-3032/3029, 메일: sarangbi@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 추천을 받을경우 복수의 추천을 받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전부개정]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 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위원회는 그 의정비심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2년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모집공고

거창군 「2022년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1월 5일

거창군수

①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비 : 48,000천원
- 사업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연 48만원 수준)간 공급

②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2. 1. 5.(수) 09:00 ~ '22. 1. 7.(금) 18:00까지
- 선정규모 : 1개 업체
- 사업내용 : 2022년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거창군 거주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 사업량 : 100명(1인당 최대 48만원 이내)
※ 사업규모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2. 1. 5.(수) 09:00 ~ 1. 7.(금) 18:00
- 접수처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담당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 신청방법 : 방문제출(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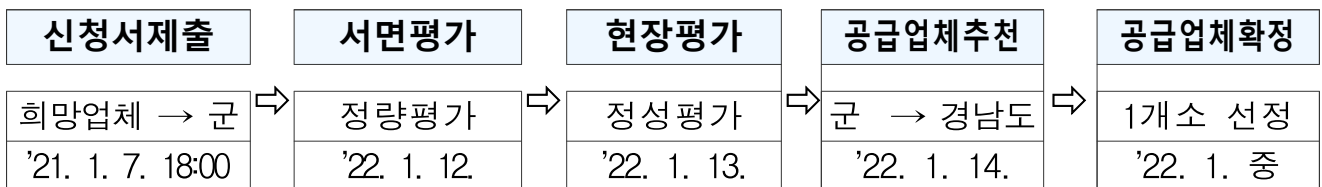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식 참고

3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인증(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을 받은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소재 농산물유통업체
- 사업 시행 전까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 정상운영이 가능하며, 공급시작일 전까지 본 사업에 맞춘 주문, 결제, 정산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이 아닌 업체이면서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등을 받지 않은 업체

4 추진절차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 추진절차



○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면평가 50%, 현장평가 50%

- 서면평가(1차) : 정량평가, 군 담당부서에서 평가 실시

· 평가항목(100) : 시설장비현황(35), 사업조직역량(40), 관리실태(25)
시·도자체기준(가점15)

- 현장평가(2차) : 정성평가, 지원업체 발표 및 현장평가

· 평가항목(100) : 사업계획적정성(10), 시설장비적정성(30), 공급업체역량(60)
· 심의위원회는 실제 시범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유통업체 발표

및 설명, 현장조사를 통한 평가

*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

○ 평가일 : '22. 1. 13.(목) 예정

- 사업발표 평가일에 미참여 업체는 사업포기로 간주
- 일정 및 내용 변경 시 지원업체 개별통보

○ 결과발표 : 2022. 1. 중. 개별통보

5 선정업체 협약

- 선정된 공급업체는 추후 선정 시 거창군과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함
 - 협약체결기간 : 미정
- 친환경농산물 공급량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정내역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공급업체 의무사항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쇼핑몰을 운영해야 함
 - 1회 공급한도 :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 배송 횟수는 임산부 1인당 월 4회(연 16회)이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향후 통합쇼핑몰을 구축할 경우 본 사업을 연동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임산부 고유번호(16자리)로 임산부 개인별 주문 및 사업비 내역을 관리해야 함
 - 16자리 : 연도(00)-시도(00)-시군구(000)-읍면동(000)-식별번호(00000)-지원 횟수(0)
 - 임산부 개인별 공급현황 및 사업비 정산시스템 구축
- 공급업체는 임산부에게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5억원, 총보상한도 5억원 이상)해야 함**
※ 공급업체 선정 후 협약 시까지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공급업체는 거창군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공급업체의 인증관련 변경사항(인증취소, 변경 및 인증 갱신 등) 발생 시 거창군에 즉시 통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임산부에게 공급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등 협약위반시 공급업체에 대한 처분에 동의해야 함
 - 해당 생산자 생산품목 공급 금지, 공급권역 조정, 공급계약 해지 등
- 친환경농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친환경 미인증농산물의 공급, 이물질 유입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거창군의 조치에 동의해야 함
- 공급업체는 거창군의 안전성검사 요청시 적극 협조 해야 함
- 거창군에서 공급업체에게 본 의무사항 이외에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거창군은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 선정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평가(서면평가, 발표평가)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제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 추가자료 요청 시 참여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업체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8 제출서류 (아래 순서를 준수하여 편철 제출) - 10부 제출 (평가활용)

구 분	구 비 서 류	기 타
공급업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업체 선정 신청서 <서식 1>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2> ○ 최근 2년간 행정처분내역 확인서류 (공급업체, 작업장 별도 제출) -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급업체(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기관) 조직도, 주주 현황 등 공급업체별 해당서류 제출 - 공급업체와 친환경농산물취급자인증의 관련확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현장평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등 작업현장 관련 자료 (usb 제출) 	발표평가 시 활용
인증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서 사본 1부. ○ GAP 인증서 사본 1부. (해당 시) ○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 시) ○ 유통시설(꾸러미작업공간) 등기부등본 1부. ○ 유통시설(꾸러미작업공간) 건축물 대장, 배치도(도면) 1부. - 꾸러미 작업장 위치 및 규격(거리, 면적) 필히 기재 - 작업공간 면적 및 (임산부꾸러미)전용작업공간 여부 표기 ○ 꾸러미 전용 작업자 현황 1부. <서식 4> 	각 인증 및 시설은 친환경농산물 취급작업장 명위에 한함
참여농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인증농가 현황 1부. <서식 5>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유통경력 증명 자료 1부. <서식 6> - 꾸러미 시작년도, 연도별 꾸러미 매출액, 유사사업 경험 등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경력 1부. <서식 7> - 학교급식 지역명 / 연도별 공급량 및 공급액, 지정서제출 ○ 2021년 친환경농산물 유통 내역 1부. <서식 8> - 유통물량(톤) 및 매출액 등 유통실적증명서 <서식 8-1> 	
불만사항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사항(클레임) 대응 매뉴얼 1부.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불만사항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 배치계획 1부. <서식 9>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 시 경우) ※ 신분증, 명함 지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선정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 명칭		법인등록번호			
	이름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		참여농가 (인증농가)	명 명	재배면적 (인증면적)	
	사업장 주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폰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친환경 농산물 유통 경력(년)	꾸러미유통: 친환경농산물유통: 친환경학교급식유통:	년 년 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2020년) (2021년)	천원 천원
	<p>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본 신청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2.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거창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일반현황

- 단 체 명 : 0000법인(대표 : ☎)
- 주 소 :
- 설립연도 :
- 최근 2년간 매출액 : 백만원 ('19년 000백만원, ' 20년 000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주요인증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자명 : ○ 인증번호 : ○ 최초 인증일자 : ○ 인증기간 : ○ 공급업체와의 관계 :
GAP 인증	
HACCP 인증	
기타	

시설·장비 현황

-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여부 :
 - 친환경농산물 작업장 : m², 일반농산물 전용작업장 : m²
- 꾸러미전용 작업공간 면적 :
- 꾸러미 전용 작업자 수 : 명

□ 생산자 연계

- 공급계약 체결 친환경인증 농가수 : 농가
 - 인증면적 :
 - 주요품목 :

□ 유통 경력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유사사업) 추진경험
 - 사업명 :
 - 주요내용 :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경험
 -
-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
 -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물량 : 톤
 -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 백만원

□ 추진계획 (상세하게 작성, 자율추가가능)

- 사업대상자 관리방안
 - 주문, 결제, 배송, 사업비 정산 방안 등 포함)
- 꾸러미 구성 및 공급계획(자율작성)
 - 상품구성, 공급방법, 신선도유지, 품질개선 계획, 처리가능 물량 (적정작업량) 등
 - 선택형 꾸러미 공급 방안 1부. (해당 시)
- 꾸러미 품질관리 및 포장, 배송계획
 - 자가배송체계 구축 내역 또는 기타 배송방법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확산 방안과 연계
- 인터넷 쇼핑몰 구축계획

- 사이트 주소 및 홈페이지 현황 등
- 개인정보 보호관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전용 공간 운영계획 포함
- 본 사업 추진 시 주문, 결제시스템 모바일 사용가능여부

□ 종합관리 계획

○ 친환경농산물 위생관리 대책

- 저온물류집배송장, 냉장창고, (저온)배송차량, 가공장, 포장재 등 위생 및 신선도 관리 등

○ 불만사항 등 민원관리 대책

- 민원대응 매뉴얼 : 별도첨부
- 전담인력 : 명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 보상액 :

□ 참여 제한업체 여부

제한사항 내역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업체 여부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내역 여부	

꾸러미 전용 작업자 현황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업무(예정)내용	계약(예정)기간

참여인증농가 현황

구분	농가명	인증번호 (1개만 기재)	지역	계약품목 (2개 이내)	계약량 (톤)	공급 시기	계약(약정) 체결일	인증면적 (' 21.12월 기준)
1(예)	홍길동		00도 00시군	토마토, 브로콜리	20톤	' 19년 ~ ' 20년	20201031	10ha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참여농가별 인증면적은 공급업체에서 필지별 세부내역을 보관해야하며 추후 거창군에서
자료요구 시 제출해야 함

< 서식 6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유통 경험

연번	계약 기간	품목	물량 (kg)	유통 처		
				유통기관	금액	계약형태

※ 공급계약 및 참여약정서등 관련자료 제출

< 서식 7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 경험

연번	계약 기간	품목	물량 (kg)	발 주 처		
				학교명	금액	계약형태

※ 지정서 등 관련자료 제출

2021년 친환경농산물 유통 내역

연번	계약 기간	품목	물량 (kg)	발 주 처		
				발주기관	금액	계약형태

※ 공급계약 및 참여약정서는 보관해야하며 요구시 제출해야 함 / 현장평가시 비치 필요

※ 각 실적별 실적증명서 첨부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번호		제출처	서울시청
	증명서용도	2022년 거창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모집공고 접수 실적 제출용		
납품 실적 내용	납품실적	친환경농산물	kg /금액	원
	계약번호		계약기간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기관명	(관인)		
	주 소			
	발급부서		연락처	
담당자		팩스번호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제출 가능

불만사항 대응 전담인력 배치계획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업무(예정)내용	계약(예정)기간